

기업예금안전거래서비스 이용약관 신구조문대비표

변경전	변경후	비고
<p>제 16 조(합의관할)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은행과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은행의 본지점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.</p>	<p>제 16 조(합의관할) 본 약관상의 해석이나 이해에 있어 상호 분쟁이 발생한 경우,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.</p>	<p>관할법원을 법이 정하는 법원으로 함</p>